

같은 사건, 다른 결과로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방향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총 33건이다. 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은 11건이다.

산업보건 사건은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로 노동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한 사건인데, 해당 기업인 두성산업 대표와 대흥알엔티 대표가 기소와 불기소로 갈렸다. 두성산업(경남 창원 소재) 대표는 지난해 6월 27일 중처법을 위반하여 노동자 16명의 독성간염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중처법이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반면, 대흥알엔티(경남 김해 소재)에서도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같은 물질이 들어간 세척제 사용으로 노동자 13명의 독성간염이 발생하였지만, 중처법 위반으로는 불기소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건조치 미이행) 혐의만 적용됐다.¹⁾

수사 장기화와 낮은 기소 건수의 이유

중처법상의 의무내용은 대략 ①절차 또는 기준 마련 ②반기 1회 이상 점검 ③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④인원배치, 조직구축 및 예산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재원과 문서작성 능력을 갖춘 기업은 이를 형식적으로나마 구비하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성립되기

1) 두성산업 사건은 유성케미칼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한 직원들이 독성간염에 동시에 걸린 사건으로서 제품성분표시에는 나와 있지 않은 트리클로로메탄이 노출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다. 대흥알엔티의 노동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역시 유성케미칼 제품이었고 트리클로로메탄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성립 하더라도 이것(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체 및 위반에 대한 책임주체를 최고경영자(CEO)로 볼 경우, CEO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더욱 입증하기 어렵게 된다. 즉, 중대재해의 원인이 CEO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법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수사기관) 측에 있는바, 이러한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하면 검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에 보완수사 지휘를 하게 되고 스스로도 많은 검토를 해야 하는 관계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중처법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이다.

기소 여부 가른 기업 규모와 대응여력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소된 11건 모두 중소기업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정 정도 재원과 문서작성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사법경찰관리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는 기소하기 곤란할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 ❶ 지난해 2월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작업자 16명이 급성 중독된 두성산업 본사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 ① 대흥알엔티의 급성 간 중독 상황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결과는 불기소 처분으로 났다. (KNN뉴스 자료화면)



같은 집단 독성감염 사건에 대해 두성산업은 기소되었지만, 대흥알엔티는 불기소되었다. 두성산업은 중소기업이지만, 대흥알엔티는 노동자 수가 700명이 넘는 대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냐가 기소, 불기소를 여부를 가른 측면이 크다.

두성산업은 중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됐다.(양사 모두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는 상반기 점검 의무 이행 전이었다는 점에서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반면, 대흥알엔티는 중처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점이 인정되어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와 모호성

중처법에서 의무·책임주체를 주로 노무가 제공되는 ‘공간’의 관점(사업장(법 제4조) 또는 시설, 장소(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산업 재해 영역의 위험관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지만 노무가 제공되는 ‘공간’과는 무관한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선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공백)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무가 제공되는 공간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보다 사회유해성 또는 불법성이 강할 수 있는 제조·수입업체는 중처법으로 아예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해 (중처법상의 처벌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약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어 책임과 관련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노동자 집단 독성간염 사고에서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 업체인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만 중처법 처벌 여부가 문제됐고, 세척제를 제조하여 양도·제공한 유성케미칼은 중처법 처벌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기소할 경우 노동계, 정치권 등에서 이에 대해 쏟아질 비판에 대한 부담, 중처법의 위상 또는 고용노동부의 권한 실추에 대한 우려, 중처법 해설서상 최종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이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없는 해석(입장) 등 때문에 CEO만을 책임주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기소 대상이 모두 중소기업이어서 CSO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CSO라고 보기 어려운 자가 선임된 관계로 CSO는 기소되지 않고 CEO만 기소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CSO를 적절하게 선임한 경우에도 검찰에서 과연 CEO를 기소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중처법에 애매모호한 규정이 매우 많아 산업현장에서는 자의적인 법집행(수사)이 남발하고 있고,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나아가 경쟁적 수사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범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처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법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수반될 뿐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고 응분의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중복·충돌을 피하고 의무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위헌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한다. 벌칙조항, 일부 문구만 부분적으로 손질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을 기대한다. 🗣



법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수반될 뿐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고 응분의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

